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구 미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¹⁾/FPGA²⁾ 모듈화 지원' 사업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됨
- 해당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능형 반도체관련 전문적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사용료 감면
 - 위 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
 - 사용주체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감면기간 : 2021. 6. 1. ~ 2023. 12. 31.(2년 7개월)
 - 사용면적 : 870.61m²(전용면적 621.98m², 공용면적 248.63m²)

1) SoC(System on Chip) :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2) FPGA :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설계 가능한 논리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선이 포함된 반도체 소자로서,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목적에 따라 여러 번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반도체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5항 2의2호

4. 참고사항

○ 스마트커넥트센터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건 립 비 : 126억원(도 37.8, 시 88.2) ※ 준공일 : '20. 11. 13.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5,858.6m²
-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운영방법
 - 건물 운영 및 관리 : 구미시(신산업정책과) 직접운영
 -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운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주관기관)

○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FPGA 모듈화 지원사업 개요

- 위 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
- 규 모 : 연면적 870.61m²
- 사업기간 : 2021. 4. 1. ~ 2023. 12. 31.
- 총사업비 : 총 95.3억원(국비 40, 지방비 45.3, 민간 10)
- 사업내용 : 기술지원 센터 구축,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
 -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을 통한 제품기능 업그레이드 및 지능화

- 추진현황

- 2020. 1. 6. :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1. 13. : '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경북지역심의 선정
- 2020. 5. 1. : '21년 산업부 신규추진 적합사업 선정
- 2020. 10. 16. : SW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4. 6. : 산업부, '21년 신규사업 주관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정
- 2021. 4. 2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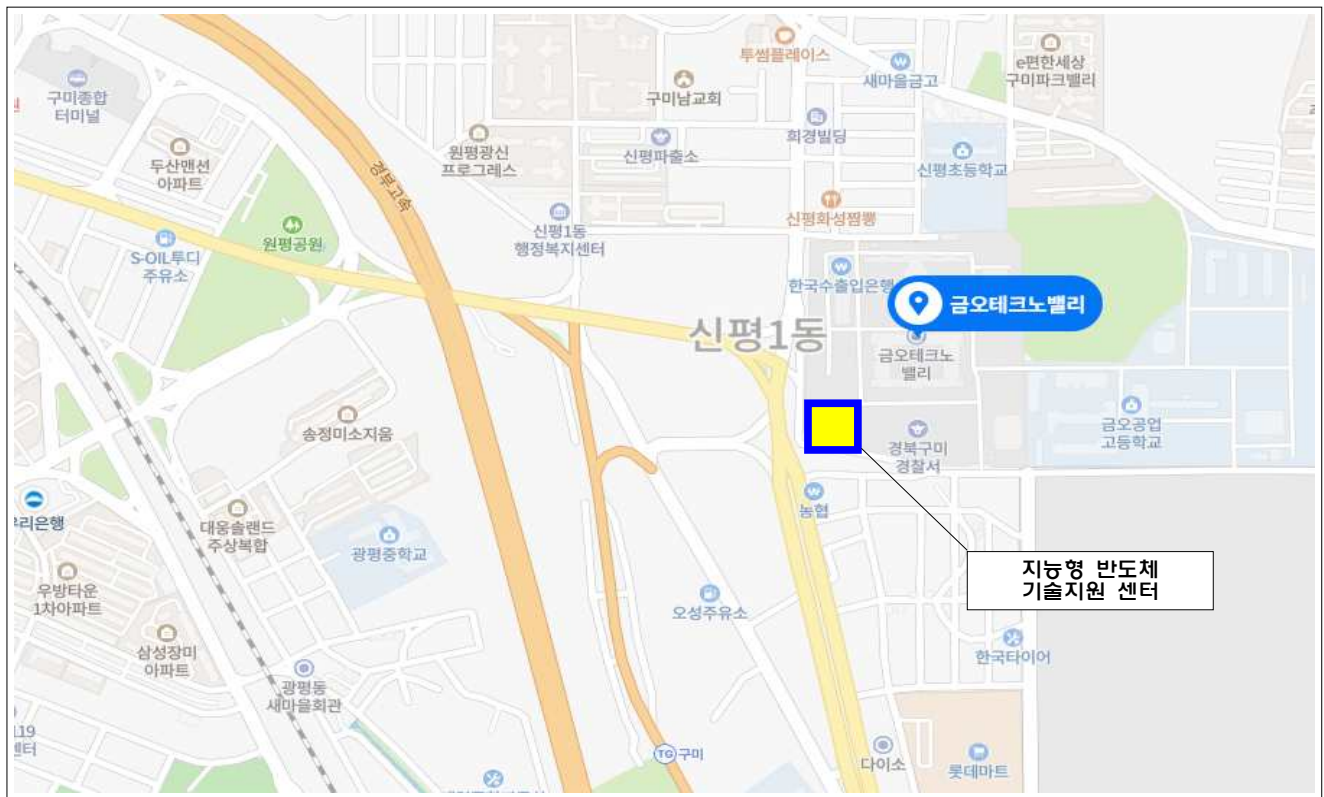
- 향후추진계획

- 2021. 5월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의회 동의
- 2021. 6월 : 센터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새롭게 창출된 지능형 스마트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관련 기업
신규 부가가치 창출 기회 제공
- 지역기업에서 보유한 부품기술과 국내외 IoT, 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위치도



■ 조감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가 지역기업에게 지능형 반도체 관련 전문적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연간 임대료 : 약 30,511천원)

- 계산식 = 전용 단위면적 × *월사용료 × 사용개월 수

$$= 621.98\text{m}^2 \times 4,088\text{원} \times 12\text{월}$$

$$= 30,510,850\text{원/년}$$

*월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

4. 작성자

- 신산업정책과 신산업정책계장 신미정(6151)
- 신산업정책과 주무관 박재만(6152)

소 관 부 서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신 미 정
	담 당 자	박 재 만 (480-6152)